

2024년도 『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』 시행 공고

2024년도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3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'과학적 원리 탐구(R&D)'에 기반한 '기술혁신'이 '시장혁신(창업·사업화)'으로 이어지도록 고난도 신기술분야의 맞춤형 창업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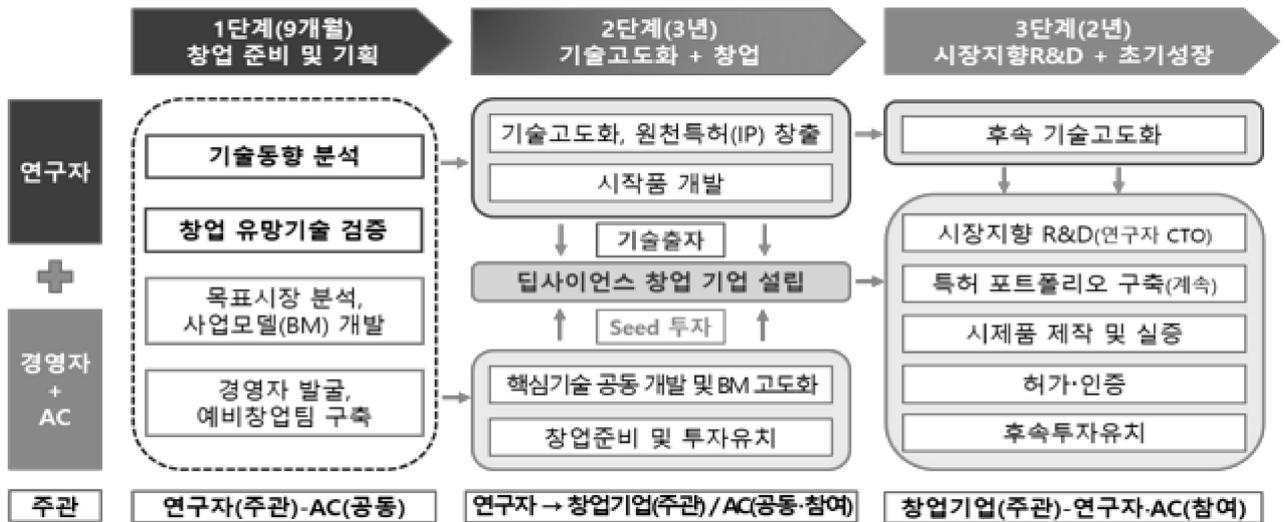
□ 사업 추진근거

-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, 제16조의4 제1항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제7호

□ 사업 내용

- 고난도 新기술분야(양자, 핵융합, 합성생물학 등)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모험적·도전적 딥사이언스 창업*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(기술혁신)-경영자(창업·사업화) 협력형 창업을 지원

*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과 R&D를 기반으로 하는 신형 기술분야의 도전적 창업



2. 지원 내용

□ 지원 기간 및 예산

- ('24년 지원기간) '24.4월 ~ '24.12월(9개월)
- ('24년 지원규모) 20억원(1단계(창업준비·기획) 약 20개 과제, 과제당 1억원 내외)
 - 과제별 최대 5년 9개월 지원(1단계 9개월 + 2단계 3년 + 3단계 2년)
 - ※ 1단계(9개월, 창업준비·기획) + 2단계(3년, 기술고도화+창업), 3단계(2년, 시장지향 R&D+초기성장) 지원하되, 단계평가마다 50% 내외의 과제만 계속 지원
 - ※ 과제당 지원규모 : (1단계)1억원/9개월, (2~3단계)5억원/년 내외
 - ※ 지원기간, 지원예산, 과제규모(과제수) 등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 내용(1단계 : 9개월) : 창업준비 및 기획

- 연구자와 창업지원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최종 수요제품·서비스를 설정 (End-game 방식*), 경영자 발굴 및 예비창업팀 구축, 목표시장 발굴·분석,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창업 준비 및 기획 지원
 - * (End-game 방식) 최종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가상의 제품·서비스를 결정한 후, 그에 필요한 기술을 예측하여 기술발굴 및 R&D 수행하는 방식
- (단계평가 : 1 → 2단계) 창업 기획의 충실성, 예비창업팀의 적절성,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, 시장 규모 및 사업화 가능성(시장성), 파급 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

< 2, 3단계 지원 개요 >

- ▶ **(2단계 : 기술고도화 + 창업지원)** 1단계(창업준비·기획) 지원과제 중 평가를 통해 **1단계 과제의 50% 내외 지원**
 - 1단계를 통해 수립된 딥사이언스 창업 기획안(BM, 예비창업팀 등)에 따라 BM 고도화, 특히 포트폴리오 구축, 시드투자 유치 및 창업 법인설립 등 추진
 - ※ 2단계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창업준비·기획 과제는 창업 기획 내용을 보완하여 차년도 2단계 지원 가능
- ▶ **(3단계 : 시장지향 R&D + 창업 초기성장)** 2단계(기술고도화+창업) 지원과제 중 평가를 통해 **2단계 과제의 50% 내외 지원**
 - 시장지향 후속 R&D, 시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실증, 제품·서비스 인허가 및 후속 투자 유치 등 추진
 - ※ (최종평가) 투자유치 실적, 제품·서비스 시장성 및 사업성,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

□ 지원 대상(1단계 : 창업준비·기획)

- **고난도 新기술분야의 연구자(기술혁신)-경영자(창업·사업화) 협력형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자(대학, 연구기관 등)-창업지원전문기관 컨소시엄**

※ ‘경영자’는 1단계에 BM개발, 창업기획에 관여하고, 2단계부터는 예비창업자로 본격 참여하여 본 사업에 전념해야 함

구분	1단계(창업준비·기획)	2단계(기술고도화+창업)	3단계(시장지향R&D)
연구책임자	▶ 연구성과 보유 연구자	▶ 연구성과 보유 연구자*	▶ 창업기업 대표(CEO)
주관기관	▶ 연구자 소속 대학출연(연)	▶ 연구자 소속 대학출연(연)*	▶ 딥사이언스 창업기업
참여/공동	▶ 창업지원전문기관** ※ ‘경영자’는 전문가로 참여	▶ 창업지원전문기관** ※ ‘경영자’는 예비창업자로 참여	▶ 창업지원전문기관** ▶ 연구자 소속 대학출연(연)

* 창업 시 창업기업 및 대표(경영자, CEO)로 변경

** 액셀러레이터(AC), 기술지주회사 등

[주관기관의 참여자격]

<1단계 / 2단계> 대학 및 연구기관

-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 가, 나, 다, 라, 마, 바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
- 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

<2단계 / 3단계> 딥사이언스 창업 기업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 사호의 회사 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또는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

[창업지원전문기관 참여자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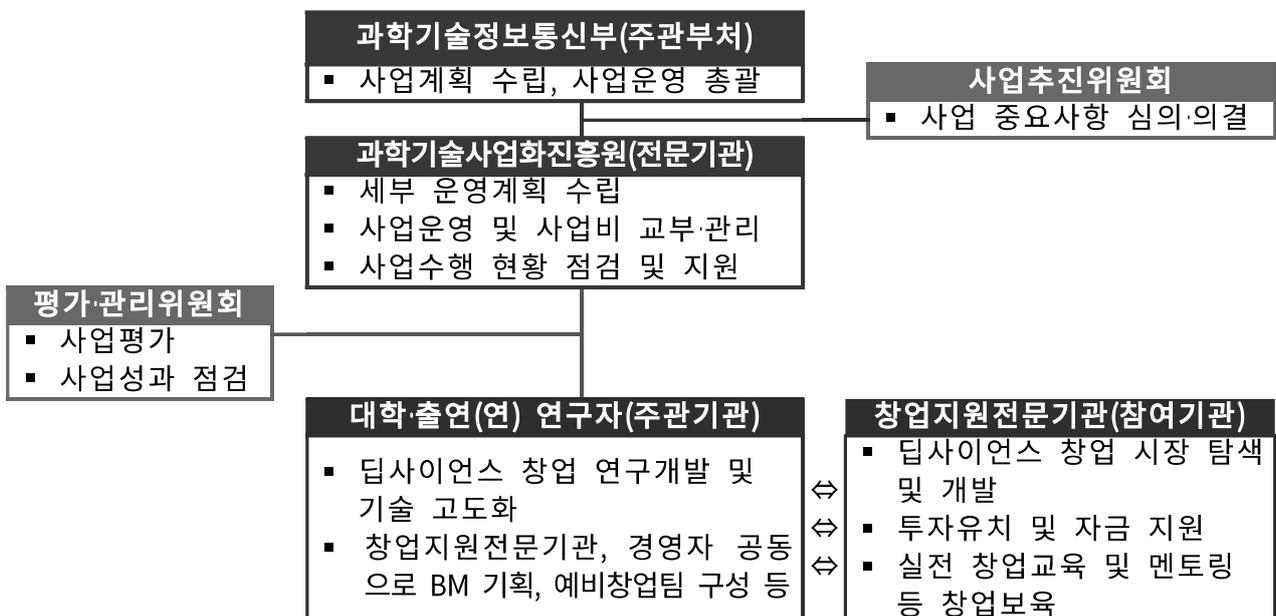
- ①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
 - ②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한 전문연구사업자(동법 시행령 별표1의 2. 연구관리산업 중 가.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 관리업, 나. 연구개발 성과 관리 활용 지원업에 한함)
 - ③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」 제36조의2에 의한 기술지주회사
 - ④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
 - ⑤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12조의2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
- ※ ①~⑤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①항의 기관(창업기획자)과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
- ※ (2단계) 창업지원전문기관은 딥사이언스 창업기업 설립 시 시드(Seed) 투자유치의 의무가 있으며, 투자유치 계획 미이행이 확인(연차점검 등)될 경우 주관기관은 창업지원전문기관 교체 가능
- ※ 창업지원전문기관은 2단계부터 창업기업 설립 전까지 예비창업자(경영자)를 채용하여 적정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함

□ 지원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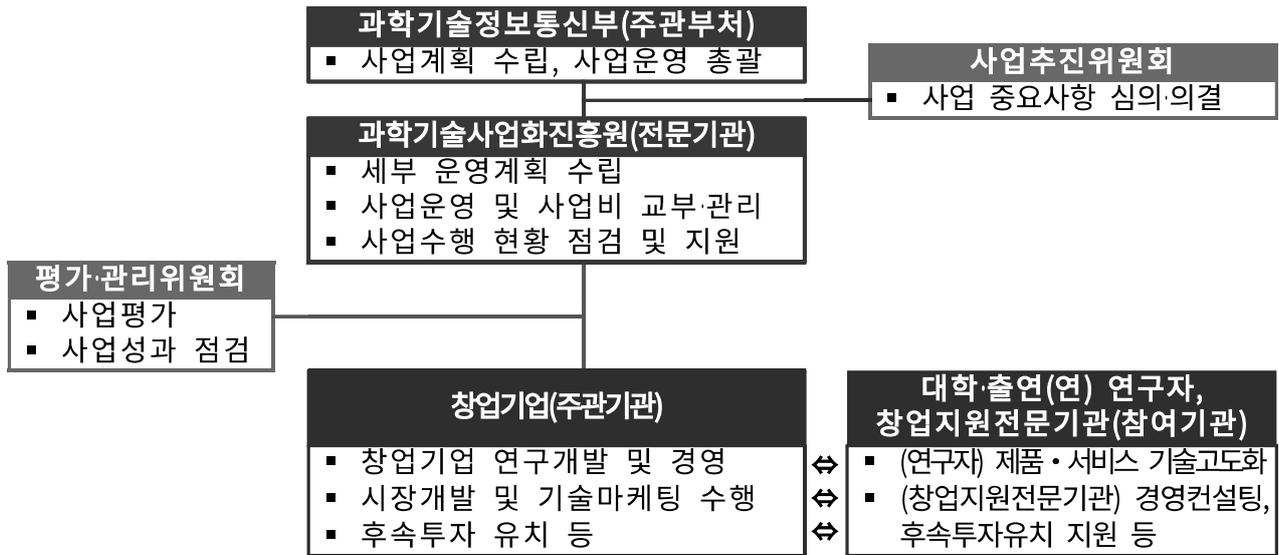
- 딥사이언스(양자, 핵융합, 합성생물학 등 고난도 신형과학기술 분야) 분야
 - ※ (딥사이언스 창업)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과 R&D를 기반으로 하는 신형 기술 분야의 도전적 창업
 - ※ 양자, 핵융합, 합성생물학 외 분야도 지원 가능하며, ‘전문가 적정성 사전검토’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여부 판정

□ 사업 추진체계

(1단계~2단계)



(2단계~3단계)



※ 2단계 중 창업 시 창업기업 및 대표(CEO)로 주관기관 변경

3. 선정평가

□ 평가절차

○ 사전검토→적정성 검토→서면평가→대면평가→심의·의결→최종선정

< 사업 선정평가 절차 및 방식(안) >

신청 접수	적정성 검토	선정평가		최종선정	결과보고
신청서 제출 및 ①사전검토	답사이언스 분야 적정성 ②적정성 검토	기본역량 ③서면평가	과제계획서 ④대면평가	선정·조정 ⑤최종심의	결과 보고
주관기관→ 전문기관	전문가 위원회	선정평가 위원회		사업추진 위원회	전문기관→ 주관부처

- ① (사전검토) 참여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,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답사이언스 적정성 검토 대상 기관 도출(전문기관)
- ② (적정성검토) 제안된 창업 핵심기술이 답사이언스 분야에 적합한지에 대해 1차적인 전문가 적정성 검토 및 서면평가 대상 선정(전문가 위원회)
- ③ (서면평가)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 여건과 역량 등에 대해 과제계획서 중심의 서면평가(선정평가위원회)
※ 단, 경쟁률이 2:1 미만인 경우 미 실시 가능
- ④ (대면평가) 신청 주관기관별로 제출한 사업 수행계획 적정성에 대한 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(선정평가위원회)
- ⑤ (최종선정)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관기관 선정 및 지원 예산 등을 최종 확정(사업추진위원회)

□ **평가지표**

- **(평가지표)** 딥사이언스 분야 적합성, 보유기술의 우수성, 창업 및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

< 평가지표(안) >

평가항목(배점)	평가내용(안)
기술분야 적합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 분야와 딥사이언스 분야의 부합성 ▶ 핵심 보유기술의 딥사이언스 분야의 부합성
보유기술 우수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딥사이언스 분야 경쟁기술 대비 연구팀 보유기술의 우수성 ▶ 핵심 보유기술의 학문적(논문 등), 산업적(특허 등) 우수성
창업 가능성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종 수요 제품(서비스)의 적합성 및 시장성 ▶ 딥사이언스 보유 성과의 창업 가능성(사업 기간 내에 창업 가능성, 단계별 사업화 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)
참여기관의 적절성 및 우수성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과제구성의 적절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관기관(연구팀), 창업지원전문기관 및 기타 참여기관의 역할분담의 적절성 ▶ 연구팀(대학 또는 출연(연)) 구성의 적절성 및 우수성 ▶ 창업지원팀(창업지원전문기관 및 참여기관) 구성의 적절성 및 우수성
추진계획 우수성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 기획 추진계획의 적절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 기획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구성의 적절성 등 ▶ 창업 기획 추진 방법 및 전략의 우수성 ▶ 기술동향 분석 방법의 우수성, 예비창업팀 구성 계획 우수성 등
파급효과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 및 사업화 시 파급효과의 우수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표시장에 대한 기술사업화 실현 시,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기대효과 등

※ 평가 지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4. 사업비 편성

-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(R&D)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·시행규칙 등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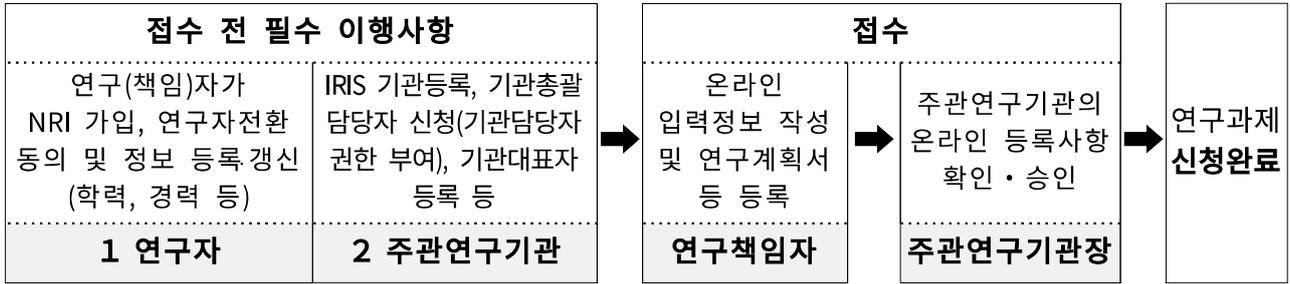
5. 사업 신청

□ **신청방법 및 절차**

-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IRIS*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 신청,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
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 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 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- 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)

[관련 문의(IRIS 문의처) 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]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1 (연구자)**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

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- 2 (주관연구기관)**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<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> 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
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-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
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□ 공고 및 신청 기간

구분	내용
사업 공고 기간	2024.02.23.(금)~2024.03.25.(월) (32일)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(신청 마감일)	2024.03.11.(월)~2024.03.25.(월) (15일)
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	
신청 절차	주관연구책임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

□ 신청 관련 주의사항

※ 유의사항 안내

-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“신청 완료(제출 완료)” 처리되어야 합니다.
“접수 중(계획서 작성 중)”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(연구책임자)**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일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

-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
- 연구책임자가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**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**[최종확인]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[제출]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**

※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,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, 반드시 다시 [최종 확인]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[제출]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 완료로 인정됨.

※ **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**

○ **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.**

- **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(제출버튼 클릭)되어야 함**

○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,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

※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(소속기관에 문의)

- 접수완료 후 유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
 - ※ 해당 기간 내에 접수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, 별도 구제 절차 없음
- **(제출서류)**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, 작성·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
-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,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자격 요건 확인 필수

□ IRIS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

- **(온라인 입력)** 기본정보, 과제요약정보,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(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), 연구비 내역, 주요 연구수행실적(수행완료 과제, 수행(신청) 중 과제) 등 정보 입력
- **(첨부)** 신청공문, 제출자료(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, 동의서 등) 업로드
 - ※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,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

구분	목록	비고
-	[필수] 신청 공문	자체 양식
-	[필수] 사업자 등록증	
별첨 1	[필수] 연구개발계획서	별첨 양식
별첨 2	[필수] 개인정보·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, 제3자 제공 동의서	
별첨 3	[필수] 기관참여 협약서	
별첨 4	[필수]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

□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
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

[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]

- ▶ “작성분량은 10P 이내”로 작성하여야 함
- ▶ 본문에 제시된 내용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과 박스는 삭제하고 내용 기술
- ▶ 폰트 및 글자 크기 제한은 없으며,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설정
- ▶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
- ▶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(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- ※ 제출한 심사 자료의 데이터 오류, 계산 착오, 불일치 등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(제출 후 수정 불가)

□ 문의처

○ IRIS 등록 관련 문의

- IRIS 고객센터 : 1877-2041/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

○ 사업 관련 문의

전담기관(담당부서)	전화번호	이메일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(기술창업팀)	02-736-2320, 9021	jkseo@compa.re.kr / grace@compa.re.kr

6.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

□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

- 본 사업의 1단계(창업준비·기획)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근거하여 **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임**

※ 단, 2, 3단계 지원과제는 과제수 제한 대상임

□ 민간부담금

- **(민간부담금)**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기업규모 및 사업비에 따른 민간부담금(현금부담금 포함) 있음

〈 민간부담금 기준 〉

구분	정부출연금	민간부담금	민간부담금 중 현금
중소기업	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% 이상	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
중견기업	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% 이하	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30% 이상	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3% 이상

※ (총연구비) =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(현물+현금)

※ (민간부담금 면제사항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‘전문연구사업자’로 신고한 경우 **참여기관은 부담금 면제 가능(주관기관은 제외)**

□ 정부납부기술료

-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, 제3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

□ 지원제외 대상

- 접수마감일 기준,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
-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

□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

- 연차·단계·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
 - 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
- 평가위원회·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조정, 과제 구성 조정, 연구비 증감, 연구기간 조정, 지원중단, 조기종료 등 가능
-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
 - 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
□ 기타 사항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에 따라 적용
 - ※ 협약, 과제 및 성과 관리, 연구비 집행·정산 등 적용
- 각 단계별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에게 단계별 주관, 공동, 위탁 기관의 예산 배분의 자율성을 보장
 - ※ 단,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사업추진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 배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
- 본 사업의 1단계(창업준비·기획)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1단계에서는 “외부전문기술활용비” 40% 초과 사용 인정

<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>

제25조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사업 착수년도 가용예산 등에 따라 선정대상으로 통보된 과제라도 과제추진이 연기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고,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
- 응모자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
- 사업공고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 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 (선정 취소 등) 가능
- (동점자 처리) 선정평가 시 동점과제의 경우,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(기술분야 적합성 → 보유기술의 우수성 → 창업가능성 → 참여기관의 적절성 및 우수성 → 추진계획 우수성 → 파급효과)
-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, 행정규칙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을 적용

7. 추진 절차 및 일정

절차	내용	일정	주체
사업 시행계획	'24년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확정	'24. 2월	주관부처 (과기정통부)
▼			
사업공고	24년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	'24. 2월	주관부처 (과기정통부)
▼			
신청서 접수	사업신청서 접수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	'24.3월	전문기관 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
▼			
(1단계) 창업준비·기획 지원대상 선정평가	사업신청서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	'24.3월 ~ 4월	전문기관 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
▼			
(1단계) 창업준비·기획 협약체결/사업비 지급	1단계 창업준비·기획 선정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'24.4월	전문기관 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
▼			
(1단계) 창업준비·기획 과제수행	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	'24.4~12월	주관기관
▼			
(1단계) 창업준비·기획 중간점검	사업수행 진행상황 점검	'24.8~9월	전문기관 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
▼			
(1단계) 창업준비·기획 단계평가	1단계 창업준비·기획 평가결과로 2단계 지원 대상과제 선정	'24.12월	전문기관 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